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(김도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911

발의연월일: 2024. 8. 16.

발 의 자:김도읍 • 권성동 • 박대출

구자근・조승환・곽규택

주진우 • 이성권 • 정희용

조지연 • 박형수 의원

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,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

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 ·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·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 도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 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

이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.

법률 제 호

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제1조(「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)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2. 피성년후견인
- 제2조(「방위사업법」의 개정)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7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·판매업 허가에 관한 특례) 이 법 시행 전에 제조·판매업자 본인 또는 그 임원이 피한정후견인에 해 당하여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·판매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는 「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4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도 허가를 받을 수 있다.

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	제4조(결격사유)
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	
•판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	
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	2. 피성년후견인
<u>견인</u>	
3. ~ 5. (생 략)	3. ~ 5. (현행과 같음)

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7조의2(군수품무역대리업의	제57조의2(군수품무역대리업의
등록) ① 군수품무역대리업을	등록) ①
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	
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	
에게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	
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	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	
는 등록을 할 수 없다.	
1. 미성년자·피성년후견인 또	1.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
는 피한정후견인	
2. ~ 4. (생 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